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현대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주로 코스닥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공모주에 참여하여 수익을 추구하여, 코스닥벤처기업 투자위험, 유동성 제약 발생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현대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현대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현대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hyundai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4년 04월 2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4년 05월 0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 또는 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투자설명서]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www.hyundaiam.com), 각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며,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8.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벤처기업 종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고 유동성이 적은 종목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 종목의 신용사건의 발생 등으로 유동성이 제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또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투자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현대강소기업증권투자신탁1호[주식]"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전환(모자형 전환 등)하며,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설정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현대강소기업증권투자신탁1호[주식]"에 투자하는 전환(합병, 모자형 전환 등)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정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의 정리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4.04.25.)

현대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펀드코드 : C6455)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현대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주로 코스닥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공모주에 참여하여 수익을 추구하여, 코스닥벤처기업 투자위험, 유동성 제약 발생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현대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코스닥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공모주에 참여**하여 수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2. 투자전략

■ 기본운용전략
- 코스닥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벤처기업 신주에 15%이상 및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 중견기업 주식의 신주 또는 구주에 35%이상 투자합니다.

■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이내	1.343%	0.76%	1.10%	1.3446 %	235	376	521	827	1,6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533%	0.95%	1.33%	1.5344 %	157	320	488	842	1,839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0.963%	0.38%	0.93%	0.9643 %	148	250	356	580	1,22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063%	0.48%	1.01%	1.0644 %	109	222	340	590	1,304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3.04.05 ~ 24.04.04 기준)*

주 2)종류 A(선취판매수수료 포함)와 종류 C 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보수 ·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된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된 시점이나 종류별 성과나 추가 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보수 및 수수료(25p)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동종유형 : 국내 혼합주식형, 2024.03.29.기준).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2.04.26 ~ 24.04.25	21.04.26 ~ 24.04.25	19.04.26 ~ 24.04.25	22.04.26 ~ 24.04.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18.04.05	25.17	11.83	6.99	10.22	8.21
비교지수		-	-	-	-	-
수익률 변동성		12.41	13.66	13.65	17.62	17.56

주1)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주2)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기타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 인력

* 기준일자 : 2024.04.25.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혼합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 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일문	1987	책임운용	6	329	13.88	5.81	18.15	8.33	3 년 11 개월
이화	1994	부책임운용	6	329	13.88	-			2 년 9 개월
이윤석	1973	부책임운용	8	25,118	-	-			7 년

* 운용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최일문, 이화 운용역 : 4개, 249억, 이윤석 운용역 : 해당사항 없음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그룹 및 채권운용그룹(공동운용)이 담당합니다.

주2)'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3)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6)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벤처기업 종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이 높고 유동성이 적은 종목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 종목의 신용 사건의 발생 등으로 유동성이 제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 년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또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투자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코스닥벤처기업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코스닥벤처기업 종목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 전체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비해서 개별 발행회사의 신용상태 또는 가격변동 등이 더 높은 종목에 투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운용 성과는 코스닥벤처기업 종목에 집중 투자하지 않는 다른 펀드의 성과대비 더 높은 변동성을 부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와 크고 작은 괴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유동성 제약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코스닥벤처기업 종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고 유동성이 적은 종목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 종목의 신용사건의 발생 등으로 유동성이 제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환매방법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기준가 매입**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대금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15시 30분 경과 후	**3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대금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hyundai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 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현대자산운용주식회사 (☏ 02-2090-0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hyundaiam.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4년 05월 08일	**존속기간**	3년 이상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yundai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37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5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5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등 (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고액(I)	납입금액이 30 억 이상 투자자가 가입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yundai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yundai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yundaiam,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현대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펀드코드: C6455)

집합투자기구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C6456
A-e (수수료선취-온라인)	C6457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6458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6459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6460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6461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C6973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6462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C646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혼합형)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주)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 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최초설정시 1좌당 1원)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하며, 모집예정금액 및 모집기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2)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2018년4월5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yundai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현대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펀드코드: C6455)

집합투자기구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C6456
A-e (수수료선취-온라인)	C6457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6458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6459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6460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6461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C6973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6462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C646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주요 내용
2018.04.05	최초설정
2019.05.22	책임운용인력 변경(김경윤→이강국) 및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2019.08.23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재현) 추가
2019.09.04	기업공시서식 개정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개편 및 한글클래스 명칭 부여
2019.10.24	부책임운용인력 변경(배윤정→한영탁) 및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관련 문구 수정
2019.12.11	부책임운용인력(이재현) 삭제
2020.03.27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운용 : 이강국→이소연, 부책임운용 : 한영탁→김승현)
2020.05.20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05.21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집합투자업자 본사 이전에 의한 주소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2022.05.20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2023.06.01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운용역 : 이소연 → 최일문, 부책임운용역 이화 추가)
2023.09.15	운용전문인력 변경(부책임운용역 : 김승현 → 이윤석) 오기 정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2024.05.08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표준편차 → 최대손실예상액)**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 ·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현대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여의도동), 전경련회관 38층 (대표전화 : 02-2090-05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4.04.25. 기준)

가. 운용전문인력

(단위 : 개, 억원, %)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주식형)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기구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최일문	1987	책임	4	249	13.88	5.81	18.15	8.33	* 운용경력 : 3년 11개월 - 2020.06~현재 : 현대자산운용 멀티운용팀 - 2018.12~2020.03 : DGB 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2017.10~2018.12 : IPO STOCK 주식운용팀
이화	1994	부책임	6	329	13.88	-			* 운용경력 : 2년 9개월 - 2020.06~현재 : 현대자산운용 멀티운용팀
이윤석	1973	부책임	8	25,118	-	-			* 운용경력 : 7년 - 2020.02~현재 : 현대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2015.02~2017.09 : KB증권 FICC 파생운용팀 - 2006.02~2015.01 시티크룹 FXLM 등 - 2001.06~2004.06 조흥투신운용 채권운용팀 -2000.01~2001.06 중앙종합금융 채권운용팀

* 운용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최일문, 이화 운용역 : 4개, 249억 / 이윤석 운용역 : 해당사항 없음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그룹 및 채권운용그룹(공동운용)이 담당합니다.

주2)'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3)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6)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구 분		운 용 기 간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소연	2020.03.27 ~ 2023.05.31
	최일문	**2023.06.01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승현	2020.03.27 ~ 2023.09.06
	이윤석	**2023.09.07 ~ 현재**
	이화	**2023.06.01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펀드코드	가입자격
종류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C6456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C6457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판매 전용 수익증권
종류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6458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6459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6460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판매 전용 수익증권
종류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6461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C6973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 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6462	납입금액이 30억 이상 투자자가 가입하는 수익증권
종류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C6463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코스닥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공모주에 참여하여** 수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90% 이하 (비상장주식에의 투자 2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 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유한회사의 경우는 출자) 및 타인 소유의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거나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포함한다)
①-1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매 6개월마다 다음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50% 및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②	채권	5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주식관련사채는 제외)이어야 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 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함)	
④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금리스왑 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⑥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	
⑦	**증권의 대여** 주2)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⑧	**증권의 차입** 주3)	20% 이하	①~④에 의한 증권의 차입	
⑨	**신탁업자와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⑩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에의 예치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주 1)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내지 ③에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4) 및 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6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6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에서 열거한 ① 내지 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2) 1.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2.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 가능

주3)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 가능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상기 ② 및 ④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 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2)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3)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본문만 해당)
동일종목 투자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 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 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 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파생상품 매매	1)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2)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 증권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로부터 1개월간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동일종목투자의 한도, 동일회사 발행 지분증권 투자 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 계열회사 발행 증권취득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기본 운용전략

- 코스닥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 추구합니다.
- 벤처기업 신주에 15% 이상 및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 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신주 또는 구주에 35% 이상 투자합니다.

■ 세부 운용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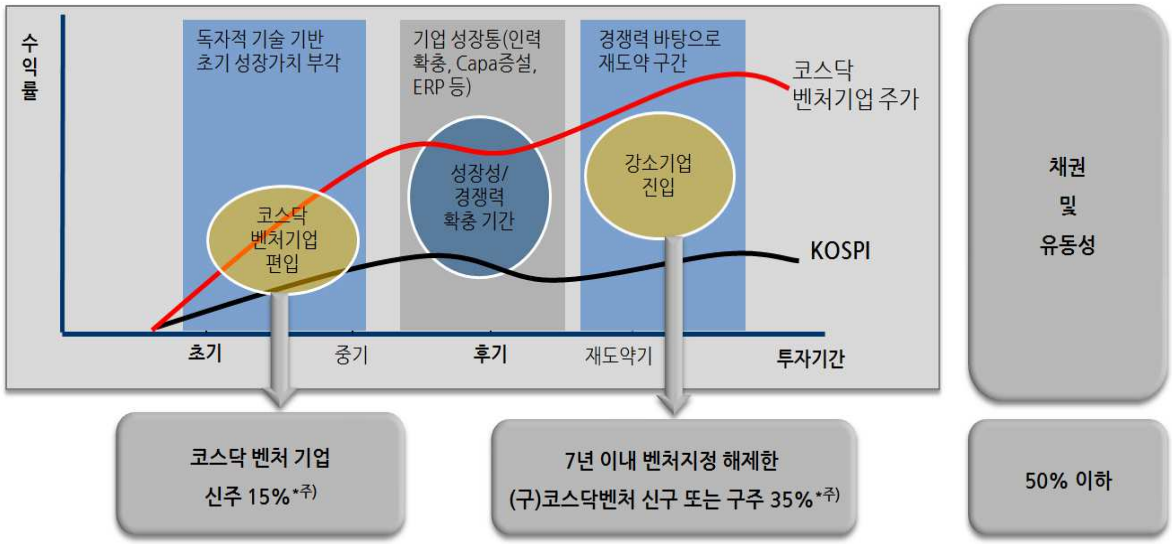

주) 코스닥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채권으로 일부 대체할 수 있음.

〈주식투자전략〉

1. 벤처기업이거나 7 년 이내 벤처기업 지정해제된 코스닥 중소 및 중견기업(이하 '코스닥벤처기업'이라 함)주식에 주로 투자
   - 벤처 기업 신주에 15% 이상 투자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 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 · 중견기업이 발행한 신주 또는 구주에 35% 이상 투자
2. 타 코스닥벤처 투자신탁과의 차별성
   - 코스닥벤처기업 중 강소기업으로 성장 가능 기업 포커스(비중확대 및 중장기투자)
   - 코스닥벤처기업 중 4 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선점 또는 시장선점 기업 포커스(비중확대 및 중장기 투자)
3. 공모주(IPO)에 의한 초과수익 추구
   - 이 상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코스닥 공모주 배정에 있어 일반 펀드에 비해 상당히 유리
   - 또한 의무보유제도(Lock-up) 활용하여 신규 공모주 배정 극대화 추구
   - 필요 시 벤처기업의 우회상장(SPAC)에도 참여하여 초과 수익 추구

〈채권투자전략〉

1. 안정적인 채권운용 및 변동성 관리
   - 채권의 경우 단기물 및 우량물 위주로 투자
2. 필요시 코스닥벤처기업 등이 발행한 메자닌 종목 투자 가능
   - 코스닥 벤처기업 신주 15% 등의 투자비율 유지 등의 목적으로 주식관련 사채에 투자 가능
   - 메자닌 종목 투자를 통해 코스닥벤처 신주 15% 이상 비율 관리

〈위험관리전략〉

1. 개별종목 리스크
   - 종목별 기술력, 현금흐름 분석 철저
   - 메자닌 종목의 경우 한 종목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분산투자
2. 시장리스크
   - 외부 매크로 환경 등으로 시장하락시에는 코스닥 150 선물 등을 이용한 헷지
3. 코스닥벤처기업 신주 취득시 유동성 중시
   -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 배정 물량 우선 확보(리스크가 가장 작음)
   - 코스닥시장내 벤처지정 기업 또는 7 년내 벤처 지정해제된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 메자닌 종목에의 투자
- 상기 2가지 방법으로 부족할 경우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 및 해당 기업이 발행한 메자닌 종목에 투자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적 활용)

■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금리는 경제· 사회· 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시세가 항상 변화하는 경제지표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정 부분을 금리의 영향을 받는 채무증권 등 이자수입을 추구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 시 이러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금리의 하락 시에는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상환금 등의 재투자 수익이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금융투자상품, 예금, 단기대출 등의 자산을 발행하거나 그와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러한 자산의 가치가 큰폭으로 하락하거나 전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코스닥 벤처기업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코스닥벤처기업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 전체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비해서 개별 발행회사의 신용상태 또는 가격변동 등이 더 높은 종목에 투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운용 성과는 코스닥벤처기업 종목에 집중 투자하지 않는 다른 펀드의 성과대비 더 높은 변동성을 부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와 크고 작은 괴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유동성 제약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코스닥벤처기업 종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고 유동성이 적은 종목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 종목의 신용사건의 발생 등으로 유동성이 제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공모주"라 함)은 과거 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래를 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운용실무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격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 보다 환매기준 가격 적용일의 기준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가격의 하락율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환매연기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매의 연기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는 보유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심각한 환금성의 제약을 받게 되고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소실을 입게 됩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일시에 집중적인 대량의 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운용전략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가 방해를 받거나 자산의 처분 자체가 처분가격 및 미처분자 산의 시장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투자신탁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타위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설정 후 3 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하 '97.5% VaR')이 32.56%임을 감안하여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 여건 변화와 주식의 가치 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국내 주식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매 결산시마다 97.5% VaR 을 재측정하게 되므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7.5% VaR' 이란?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을 말합니다.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에서 2.5%에 해당하는 손실률(신뢰수준 97.5%)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하여 등급 기준표상의 상한치를 비교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97.5% VaR 기준 위험등급 구간

등급	1 (매우높은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높은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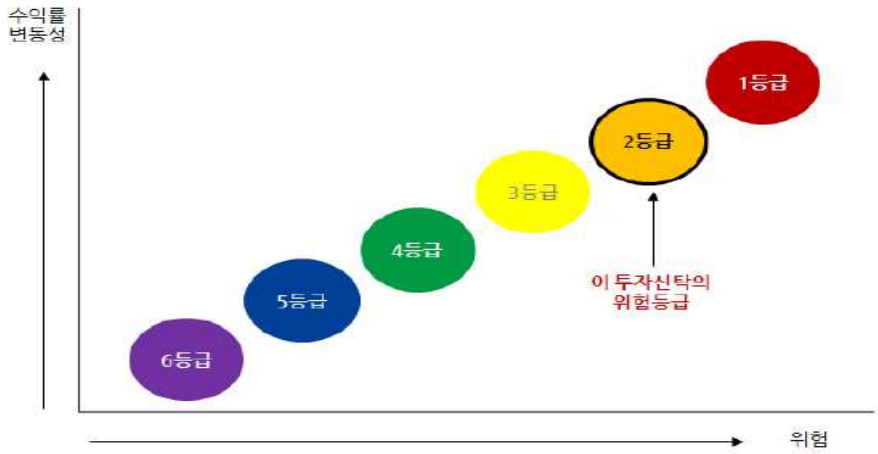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내용
종류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판매 전용 수익증권
종류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판매 전용 수익증권
종류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 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납입금액이 30억 이상 투자자가 가입하는 수익증권
종류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u>오후 3시 30분 이전</u>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u>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D+1)</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 <u>오후 3시 30분 경과 후</u>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u>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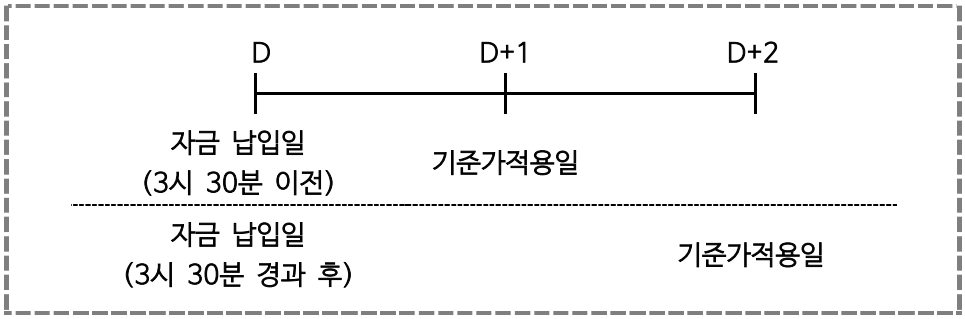

3)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2)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2)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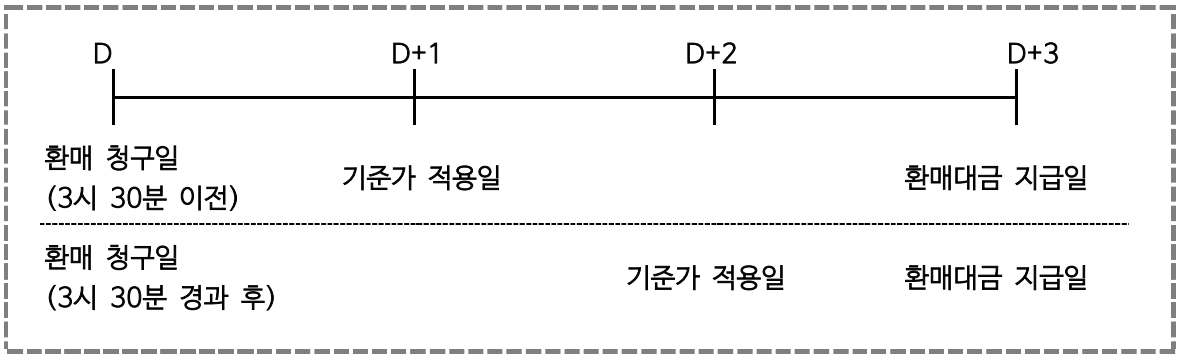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 전전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 하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 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 사유

-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 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http://www.hyundaiam.com)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 판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

주)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해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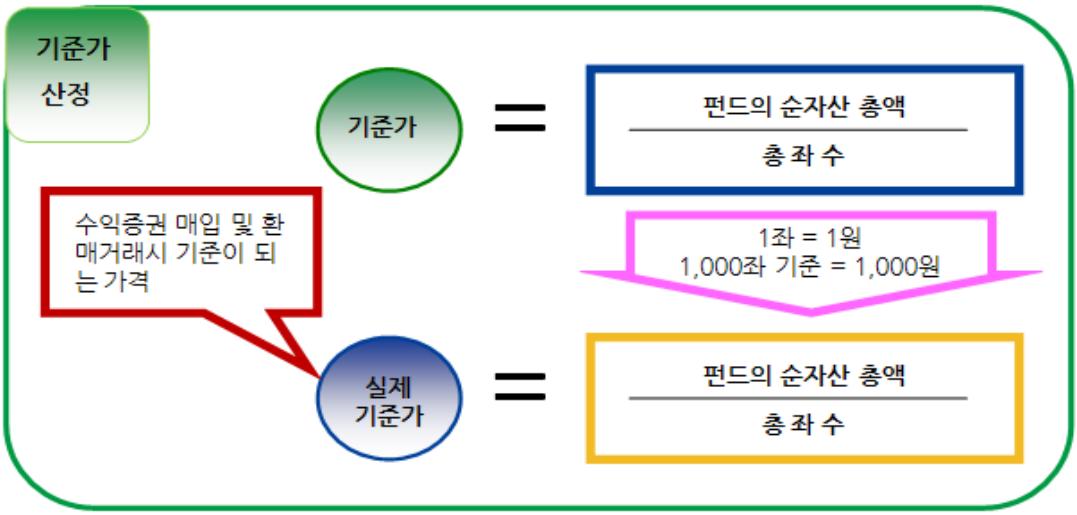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최종시가 없는 상장채권을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타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거나 매각이 제한되는 등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투자재산의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종류별)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종류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납입금액의 1.0% 이내	-	-	-
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납입금액의 0.5% 이내	-	-	-
종류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납입금액의 0.7% 이내	-	-	-
종류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	-	-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	-	-
종류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	-	-
종류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	-	-	-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	-	-
종류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부과기준	매입 시	환매 시	환매 시	

* 종류별 가입자격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 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거래비용
종류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535	0.760	0.030	0.018	1.343	0.0016	1.3446	1.10	1.3446	0.7173
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0.535	0.380	0.030	0.018	0.963	0.0013	0.9643	0.93	0.9643	0.6987
종류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535	0.530	0.030	0.018	1.113	-	1.113	-	1.113	-
종류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535	0.950	0.030	0.018	1.533	0.0014	1.5344	1.33	1.5344	0.7017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0.535	0.480	0.030	0.018	1.063	0.0014	1.0644	1.01	1.0644	0.6981

종류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535	0.670	0.030	0.018	1.253	-	1.253	-	1.253	-
종류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0.535	0.050	0.030	0.018	0.633	0.0012	0.6342	-	0.6342	0.7044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0.535	0.100	0.030	0.018	0.683	-	0.683		0.683	-
종류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0.535	0.270	0.030	0.018	0.853	0.0015	0.8545	-	0.8545	0.6949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 직전 회계연도 : 2023.04.05 ~ 2024.04.04*

주1)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기타비용	48

주2)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24,019

주3)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금융비용	-

주4)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이 다른 집합투자기구(모투자신탁 포함)에 투자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6)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동종유형 : 국내 혼합주식형, 2024.03.29 기준)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투자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종류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5	376	521	827	1,69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35	376	521	827	1,695
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8	250	356	580	1,22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48	250	356	580	1,226
종류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3	300	421	678	1,41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83	300	421	678	1,412
종류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7	320	488	842	1,83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57	320	488	842	1,839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9	222	340	590	1,30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9	222	340	590	1,304
종류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8	262	400	692	1,52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8	262	400	692	1,522
종류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5	133	204	355	79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65	133	204	355	793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0	143	219	381	85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0	143	219	381	852
종류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3	195	274	476	1,05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3	195	274	476	1,058

주1)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실제 판매수수료율 수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종류 A(선취판매수수료 포함)와 종류 C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보수 ·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경과된 시점이며, 종류 Ae(선취판매수수료 포함)와 종류 Ce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보수 ·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경과된 시점이나, 종류별 성과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종류 S의 경우 1년후는 그 시점에 환매 청구한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 0.15%를 반영하였고, 3년후부터는 3년이 지난 시점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 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안내 사항]

이 투자신탁은 매년 결산·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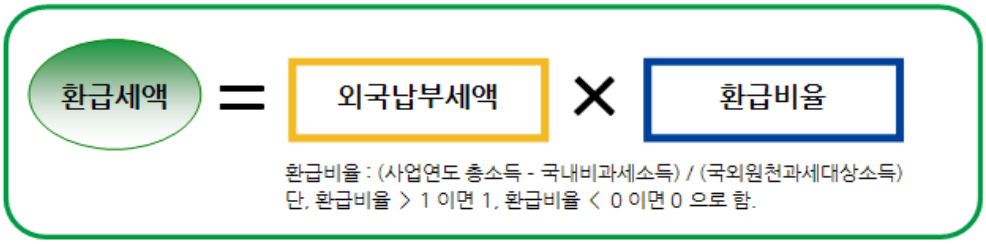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8%, **지방소득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이 투자신탁은 타 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른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투자신탁입니다. 아래의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상세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 조
가입기간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계약기간	3 년 이상
세제혜택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투자(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거주자 1 인당 소득공제한도는 300 만원)
소득공제방법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신청서에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판매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소득세법」 제 73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 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그 외의 투자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면세액추징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수익증권 투자일(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 년이 지나기 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수익증권 투자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추징받음.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1. 투자자 본인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 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 부품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14 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 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6 기(2023.04.05 - 2024.04.04)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5 기(2022.04.05 - 2023.04.04)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4 기(2021.04.05 - 2022.04.04)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6 기 (2024.04.04)	제 5 기 (2023.04.04)	제 4 기 (2022.04.04)
운용자산	3,388,601,632	3,526,310,718	3,833,225,023
증권	2,672,414,430	2,999,159,490	3,387,237,27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716,187,202	527,151,228	445,987,753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38,524,787	160,208,768	174,474,431
자산총계	3,527,126,419	3,686,519,486	4,007,699,45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880,000	111,783,641	116,553,164
부채총계	4,880,000	111,783,641	116,553,164
원본	2,008,307,150	2,491,638,971	2,741,072,911
수익조정금	-105,534,731	1,991,560	-74,452,283
이익잉여금	1,619,474,000	1,081,105,314	1,224,525,662
자본총계	3,522,246,419	3,574,735,845	3,891,146,290

손익계산서			
항 목	제 6 기 (2023.04.05 - 2024.04.04)	제 5 기 (2022.04.05 - 2023.04.04)	제 4 기 (2021.04.05 - 2022.04.04)
운용수익	708,892,820	41,855,955	343,000,077
이자수익	16,627,680	10,814,354	4,015,591
배당수익	10,835,935	11,127,645	7,496,681
매매/평가차익(손)	681,429,205	19,913,956	331,487,805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10,421,16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10,421,160	0
당기순이익	708,892,820	31,434,795	343,000,077
매매회전율	319.00	330.05	473.19

주1)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 "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5)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3.04.05 - 2024.04.04)			전기(2022.04.05 - 2023.04.04)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16,864	24.0187	0.1424	18,694	21	0.115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합계	16,864	24.0187	0.1424	18,694	21	0.115

주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주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491,520	7,020	502,779	9,059	2,840	319	

주1) 동종유형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 229 조에 따른 5 가지 종류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제6기(2024.04.04) 금 액		제5기(2023.04.04) 금 액		제4기(2022.04.04)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716,187,202		527,151,228		445,987,753
1. 현금및현금성자산	711,307,202		523,161,728		442,349,753	
2. 예치금						
3. 증거금	4,880,000		3,989,500		3,638,000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2,672,414,430		2,999,159,490		3,387,237,270
1. 지분증권	2,672,414,430		2,999,159,490		3,387,237,270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38,524,787		160,208,768		174,474,431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28,253,095		149,636,865		167,741,535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224,107		144,498		47,186	
4. 미수배당금	10,047,585		10,427,405		6,685,710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3,527,126,419		3,686,519,486		4,007,699,454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4,880,000		111,783,641		116,553,164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4,880,000		91,543,089		104,576,240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20,240,552		10,988,424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988,500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4,880,000		111,783,641		116,553,164
자 본						
1. 원 본	2,008,307,150		2,491,638,971		2,741,072,911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1,513,939,269		1,083,096,874		1,150,073,379	
(발행좌수 당기: 2,008,307,150 좌)	이익잉여금	1,619,474,000		1,081,105,314		1,224,525,662
전기: 2,491,638,971 좌)	수익조정금	-105,534,731		1,991,560		-74,452,283
전전기: 2,741,072,911 좌)						
(기준가격 당기: 1,742.26 원)						
전기: 1,432.36 원)						
전전기: 1,416.07 원)						
자 본 총 계		3,522,246,419		3,574,735,845		3,891,146,29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527,126,419		3,686,519,486		4,007,699,454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6기(2023.04.05-2024.04.04) 금 액		제5기(2022.04.05-2023.04.04) 금 액		제4기(2021.04.05-2022.04.04)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27,463,615		21,941,999		11,512,272
1. 이 자 수 익	16,627,680		10,814,354		4,015,591	
2. 배당금수익	10,835,935		11,127,645		7,496,681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335,603,741		931,198,456		1,411,041,668
1. 지분증권매매차익	1,335,603,741		860,191,659		1,410,952,206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70,992,767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14,030		89,462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654,174,536		911,284,500		1,079,553,863
1. 지분증권매매차손	382,738,752		911,284,500		983,392,584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271,435,784				96,161,279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운 용 비 용				10,421,160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0,421,16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708,892,820		31,434,795		343,000,077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35298028		0.012616111		0.125133511

주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억좌, 억원]

Class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A	2023.04.05 - 2024.04.04	5	6	4	6	7	9	2	4
	2022.04.05 - 2023.04.04	4	6	1	1	0	0	5	6
	2021.04.05 - 2022.04.04	10	13	2	3	8	10	4	6
A-e	2023.04.05 - 2024.04.04	5	6	1	1	2	2	4	6
	2022.04.05 - 2023.04.04	5	7	1	1	1	1	5	6
	2021.04.05 -	4	6	8	11	7	10	5	7

	2022.04.04								
C	2023.04.05 - 2024.04.04	4	5	0	0	0	0	4	6
	2022.04.05 - 2023.04.04	4	6	0	0	1	1	4	5
	2021.04.05 - 2022.04.04	7	9	0	1	3	4	4	6
C-e	2023.04.05 - 2024.04.04	5	7	1	2	2	3	4	6
	2022.04.05 - 2023.04.04	6	8	1	1	2	2	5	7
	2021.04.05 - 2022.04.04	4	6	8	10	7	9	6	8
S	2023.04.05 - 2024.04.04	6	8	1	2	2	3	5	9
	2022.04.05 - 2023.04.04	7	10	1	1	2	2	6	8
	2021.04.05 - 2022.04.04	7	9	3	4	3	4	7	10
C-f	2023.04.05 - 2024.04.04	2	3	0	0	0	0	2	3
	2022.04.05 - 2023.04.04	2	3	0	0	0	0	2	3
	2021.04.05 - 2022.04.04	2	3	0	0	0	0	2	3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연평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 년 23.04.26 ~ 24.04.25	최근 2년 22.04.26 ~ 24.04.25	최근 3년 21.04.26 ~ 24.04.25	최근 5년 19.04.26 ~ 24.04.25	설정일 이후 18.04.05 ~ 24.04.25
투자신탁(운용)	27.03	13.55	8.63	11.91	9.87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2.41	13.66	13.65	17.62	17.56
종류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25.40	12.04	7.19	10.43	8.41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2.41	13.66	13.65	17.62	17.56
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25.86	12.46	7.59	10.85	8.82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2.41	13.66	13.65	17.62	17.56
종류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25.17	11.83	6.99	10.22	8.21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2.41	13.66	13.65	17.62	17.56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25.74	12.35	7.49	10.74	8.71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2.41	13.66	13.65	17.62	17.56
종류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25.99	12.59	7.71	10.97	8.94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2.41	13.66	13.65	17.62	17.56
종류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26.26	12.83	7.95	11.21	9.18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2.41	13.66	13.65	17.62	17.56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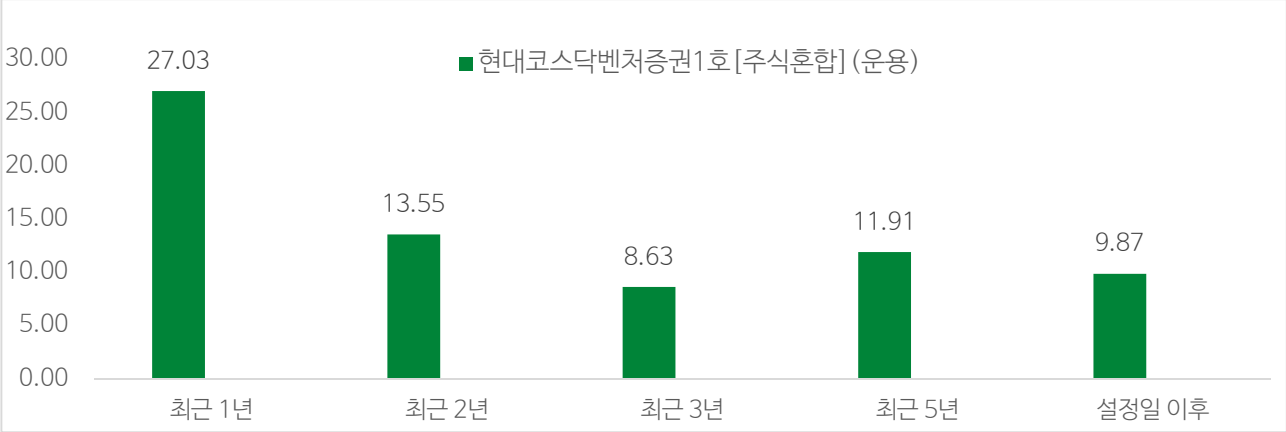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년차 23.04.26 ~ 24.04.25	최근 2년차 22.04.26 ~ 23.04.25	최근 3년차 21.04.26 ~ 22.04.25	최근 4년차 20.04.26 ~ 21.04.25	최근5년차 19.04.26 ~ 20.04.25
투자신탁(운용)	27.12	1.46	-0.59	54.22	-11.15
비교지수	-	-	-	-	-
종류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25.47	0.07	-1.90	52.25	-12.38
비교지수	-	-	-	-	-
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25.94	0.46	-1.54	52.80	-12.04
비교지수	-	-	-	-	-
종류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25.25	-0.12	-2.09	51.97	-12.56
비교지수	-	-	-	-	-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25.82	0.36	-1.63	52.66	-12.13
비교지수	-	-	-	-	-
종류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26.07	0.57	-1.43	52.97	-11.94
비교지수	-	-	-	-	-
종류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26.34	0.80	-1.21	53.29	-11.74

비교지수	-	-	-	-	-

주1)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2)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 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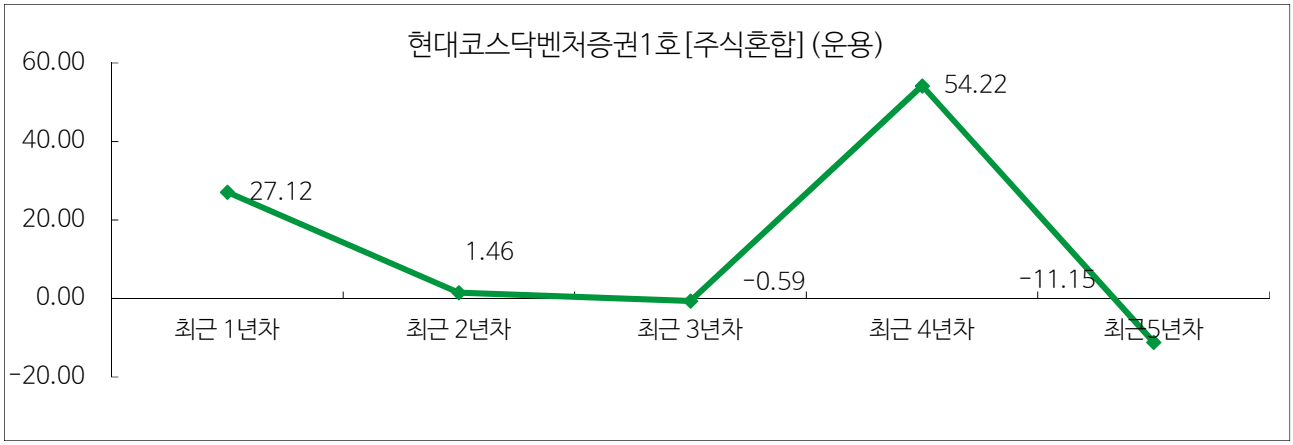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4.04.04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27	0	0	0	0	0	0	0	0	7	1	35
	(75.7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7)	(4.06)	(100.00)
합계	27	0	0	0	0	0	0	0	0	7	1	35
	(75.7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7)	(4.06)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 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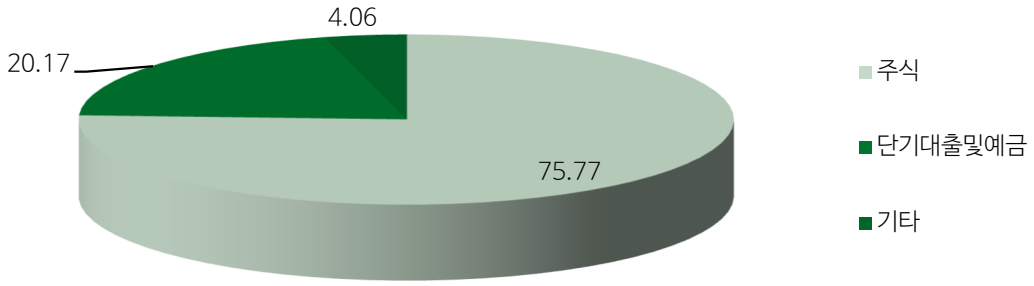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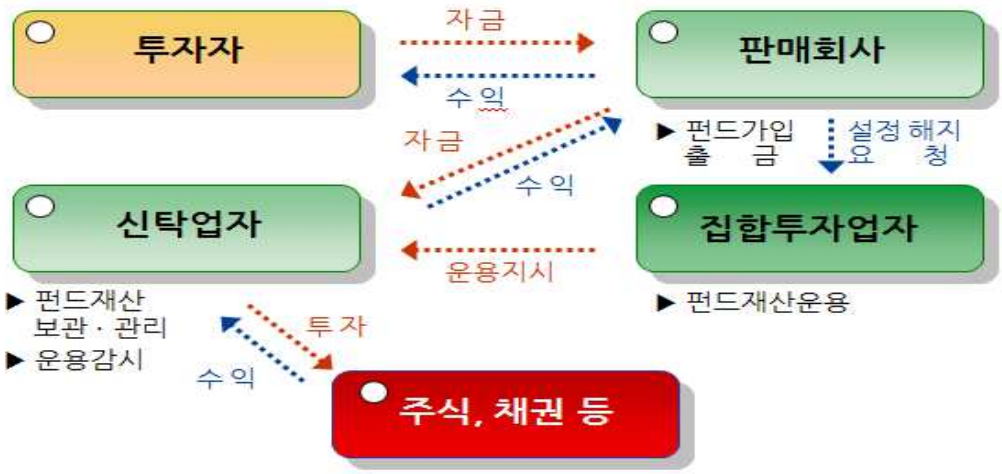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현대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여의도동), 전경련회관 38층 (연락처 : 02-2090-0500, www.hyundaiam.com)
회사 연혁	2008. 11. 24 현대펀드주식회사 법인 설립 2009. 06. 17 집합투자업 등록 2009. 06. 17 현대펀드㈜에서 현대자산운용㈜로 상호변경 2009. 07. 30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등록 2010. 03. 18 2009 아시아경제 펀드대상 「라이징스타펀드」수상 2010. 11. 30 2010 헤럴드경제 펀드대상 「최우수 신규펀드」수상 2011. 02. 08 2010 매일경제 펀드대상 「최우수상」수상 2011. 02. 24 2011 아시아경제 펀드대상 「최우수상」수상 2012. 02. 28 2011 아시아경제 펀드대상 「최우수상-굿디자인상」수상 2014. 11. 17 2014 헤럴드경제 펀드대상 「최우수 국내펀드 중소형부문」수상
자본금	323억원
주요주주 현황	㈜무궁화신탁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 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억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과목	2023.12.31	2022.12.31	과목	2023.01.01~ 2023.12.31	2022.01.01~ 2022.12.31
현금및예치금	50	168	영업수익	210	425
증권	212	188			
대출채권	0	0	영업비용	297	401
유형자산	31	45			
무형자산	13	14	영업이익	-87	24
기타자산	160	151			
자산총계	466	566	영업외수익	4	4
차입부채	82	84			
기타부채	53	101	영업외비용	0	4
부채총계	135	185			
자본금	323	315	법인세차감전이익	-83	24
자본잉여금	52	3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6	법인세비용	-14	10
이익잉여금	-45	25	당기순이익	-69	14
자본총계	331	381			

라. 운용자산 규모(2024.04.25 기준 / 단위 : 억원)

구분	증 권					부동산 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파생	MMF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2,525	6,469	755	2,257	2,188	22,347	7,399	2,753	28,036	74,728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증권금융㈜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 02-3770-88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1955.10 회사 설립 1962.07 한국증권금융㈜로 개칭 (http://www.ksfc.co.kr/)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회사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02) 2180-0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0.06 회사 설립 2008.0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www.shinhanfundpartners.com)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 개요

회 사 명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02-398-3900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 02-399-335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www.koreaap.com	www.bond.co.kr

(2)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 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법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 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 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 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 ·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 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 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이 투자신탁을 임의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펀드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해소 및 관리 정책]

금융위원회의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을 '임의해지', '소규모펀드 합병', '모펀드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립한 정리계획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 공모 추가형 펀드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펀드 정리 이행실적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합니다.

[발생 사전 억제 정책]

신규 펀드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시 판매사에 해당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및 클래스 추가를 위한 경우이거나, 펀드의 최초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펀드 설정 후 6개월간 펀드의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 등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펀드는 당사의 대표펀드(투자대상자산이 유사한 펀드로서, 당사가 정하는 펀드)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
2. **펀드 설정 1년 후에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해지', '소규모 펀드 합병', '모펀드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리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 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
- 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및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FAX,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hyundaiam.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 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 거래	1)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편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2) 선정절차 - 정기적인 중개회사 평가를 통해 중개회사와 중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 - 운용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음 -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름 -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 -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위탁을 지정할 수 없음. 단, 블록트레이딩(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음 3) 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 -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함 -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함 -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 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투자주체 : 현대자산운용
- 투자목적 :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간 펀드 성과에 대한 공유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투자시기 : 최초설정일
- 투자금액 : 2억원
- 투자기간 : 최초설정일부터 3년간
- 투자금 회수계획 :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다만,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합니다.

주1)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당연 해지사유 발생,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 해산하는 경우,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 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의무를 승계

주2)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 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펀드 기준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펀드 운용성과의 척도로 사용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이자 · 배당소득	펀드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가입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환매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환매수수료는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수익자들이 모여 의사결정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 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투자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금리스왑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